

國際環境規範과 貿易連繫*

申漢東**

-
- I. 序說
 - II. 經濟開發과 環境對策
 - III. 貿易에 影響을 미칠 國際環境規範
 - IV. 環境規制에 대한 主要國家의 對策
 - V. 結論
-

I. 序說

지구촌은 21세기를 앞두고 심각한 환경오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산업혁명 이전까지만 해도 인류는 비록 자연을 정복의 대상으로 삼기는 했어도 환경오염을 예상하거나 실제 피부로 느낄 계제는 못되었다. 그러나 산업혁명 이후 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대량생산은 대량소비로 이어지면서 사정은 달라졌다.

1960년대 이후 나라마다 에너지 및 용수 소비형 중화학 중심의 공업화 정책 추진과 소비자들의 물질만능주의적인 소비형태 그리고 소비자 使用便宜위주로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생산전략으로 지구촌은 심각한 환경공해에 시달리고 있다.

정부는 개발위주로 공업화 정책의 포로가 되었고 기업 역시 대량생산으로 이윤을 극대화하는 데만 혈안이 되었다.

그 결과 자원은 고갈되고 생태계는 파괴되었으며 각종환경오염물질은 물과 바람을 타고 국경을 초월하여 주변국가를 넘나들게 됨으로써 인류마저도 공멸의 위기를 자초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선진공업국가들은 환경보호를 위한

* 本論文은 1997學年度 韓國學術振興財團의 支援金으로 研究된 內容중 一部임.

** 한남대학교 교수.

공해유발 생산활동을 制限하면서도 공업화에 치중하는 二律背反的 행위를 함으로써 環境汚染은 產業發展과 經濟開發의 부산물이라 할 수 있다. 생산위주의 공업화는 인간의 유일한 생존터전인 지구가 自淨能力을 잃게 되는 요인이 되자 1996년 4월 미국의 국무장관은 광범위한 환경외교정책을 발표함으로써 새로운 접근을 공식화했다.¹⁾

산업사회의 결함중 하나가 타인의 건강과 재산에 피해를 입히면서 오직 자신의 영리를 목적으로 상품의 생산활동을 계속하기 쉽다는 점이라 할 수 있다. 환경问题是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인지를 가려서 분쟁당사자로 법정에 마주 세우거나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막대한 사회비용을 유발하면서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활동은 인류발전에 기여하기보다는 오히려 장기적으로 역행하는 활동으로서 마땅히 비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이를 종식시키고 지구의 自淨能力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일국의 정부나 지구촌의 강력한 세력의 개입이 반드시 필요하다²⁾고 본다.

환경을 오염시키면서 생산활동을 하는 정부행위³⁾와 산업활동은 더이상 묵인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1972년 스ток홀름에서 개최된 환경회의를 계기로 지금까지 150여개 이상의 국제환경협약이 체결되어 있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환경상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개발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과 국제협력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 와서 강력한 소비자연합체가 구성되었으며 이들의 활동 역시 환경오염을 방지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본 글은 선진 산업국가에서 추진되고 있는 환경보호운동과 관련하여 입법 제정된 환경법을 검토하고 우리 나라의 수출산업의 생산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 1) Steven Greenhouse, "The Greening of U.S. Diplomacy: Focus on Ecology", *New York Times*, 9 October 1995; Secretary of State Warren Christopher, "American Diplomacy and the Global Environmental Challenges of the 21st Century", address at Stanford University, Palo Alto, Calif., 9 April 1996.
 - 2) A.C. Pigue, *The Economics of Welfare*(New York : AMS Press, 1978) ; R.H. Coase, "The problem of Social Cost",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October 1960.
 - 3) Volker Boge, "Bougainville : A 'Classical' Environmental Conflict". Occasional Paper No. 3, ENCOP, Bem, Switzerland, October 1922.

II. 經濟開發과 環境對策

1. 경제개발과 환경오염

환경오염은 산업발전과 경제개발의 부산물로 인식되고 있다. 산업혁명 이후 선진국 중심으로 진행되어 온 공업화가 1970년대에는 국가마다 산업화를 지향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야기시켰으며, 환경오염은 인간의 유일한 생존터전인 지구가 자정능력을 잃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기업과 국가가 경쟁적으로 자신의 경제적 영리를 취할 목적으로 消費物質 萬能主義의인 생산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가중되었다는 사실을 역사적으로 경험해 왔다.

기업과 국가는 대외경쟁력⁴⁾을 근시안적으로 대처하기 쉬우므로 환경문제를 소홀히하거나 또는 무시하기 쉽다. 대외경쟁력은 곧 국제경쟁력 또는 수출경쟁력을 의미하며 주로 자신이 생산한 상품의 품질과 가격에 의해 좌우된다.

국민의 항구적인 건강과 미래지향적인 행복보다는 경영자 또는 위정자의 임기중 경제적 업적에 치중하려는 근시안적 산업화정책이 환경오염의 정도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임기중에 기업의 이윤을 향상시키지 못하였거나 국민소득을 향상시키지 못한 위정자는 연임이나 재임을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경제주체는 이윤추구나 소득향상에 부담이 되는 오염방지나 환경개선부담금으로 비용을 지출하는데 인색해지기 쉽다. 인간의 소비생활을 편리하고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는 경제개발이 불가피하게 요구되지만 인류는 이미 GNP 성장위주의 경제개발로 대기·수질·토양을 크게 훼손하여 지역주민들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환경피해를 입힌다는 경험과 교훈을 주기⁵⁾도 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환경问题是 정치·경제·사회적 차원에서 자유롭지 않으며, 윤리적·문화적·제도적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되어 환경적으로 건전

4) 1993년 OECD Workshop에서 “경쟁력이란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장기에 걸쳐 꾸준히 향상되는 동시에 국가가 국제시장의 기호에 맞는 재화와 용역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하였다.

5) 일본은 1953년부터 미나마타병, 이타이이타이병 등 4대 공해사건을 경험했고, 우리는 1986년 울산·온산 공업단지지역을 ‘공해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고 주민 34,533명에게 3,337억 원의 피해보상을 한바 있다.

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오존층 파괴현상, 지구평균기온의 상승, 엘니뇨 현상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바로 인간의 그릇된 경제개발과 소비형태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것이 규명되고 있다.⁶⁾

문제는 경제개발은 국경이 있으나 환경오염은 국경이 없다는 점이다. 경제개발의 이익은 개발주체에게 돌아가지만 개발에 따른 피해는 개발의 혜택이 적거나 심지어 개발과 전혀 관련이 없는 타인에게까지 부담을 주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나아가 지구촌 전체의 환경오염을 가중시키므로 경제개발과 환경오염은 양립할 수 없는 조화를 이루어어야 할 문제로서 지구촌의 모든 생명체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생활문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1983년 UN 총회 결의에 따라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WCED)가 구성되어 '우리의 공동미래'(Our Common Future)⁷⁾라는 환경보고서를 발간함으로써 지구의 '지속 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로 국적, 지역적 및 국제적 차원의 제도와 법률을 마련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 후 1992년 6월 리우 선언⁸⁾에서 '의제 21'을 채택하여 환경과 개발문제를 조화시키기 위한 世界政略의 理念的 방향을 설정하고 지구환경보호를 위한 기본적 원칙과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⁹⁾

그러나, 1996년까지 117개국이 정부 대부분은 기존의 환경 및 개발 프로그램들을 묘사할 뿐 광범위하며 수사적이고 자기만족에 그치는 서류에 지나지 않는 정책을 구사하고 있을 뿐이다.¹⁰⁾

2. 환경규제와 통상질서

환경问题是 대량소비국가에서 폐품처리에 따른 사회비용 증가로 지역주민들

6) 김범철·이승환 옮김 "지구환경보고서(State of the World)" 전내용 취지, 1997, 따님.

7) 당시에 위원장인 노르웨이의 여수상 Brundtland이 작성하였으며 공동의 관심(Common Concern), 공동의 도전(Common Challenges), 공동의 노력(Common Endeavor) 등 3개 부문으로 되어 있다.

8) 178개국의 정부대표 8,000여명과 환경단체장 25,000여명이 참석한 최대규모로서 전문과 27개 원칙으로 구성되었으며, 그 실천계획으로 총 40장과 환경문제의 원인을 규명하고 있는 '의제 21'을 채택하였다.

9) 이상돈,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법,

10) World Resources Institute(WRI), International Institute for Environment and Development and World Conservation Union, Washington, D.C. 1996.

에게 외부비경제 효과를 초래하면서 사회문제로 비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선진국은 이러한 외부비경제 효과를 해결하기 위하여 생산자에게 환경판세부과, 생산공정환경기준강화, 벌금 등을 통해 환경오염 유발기업의 생산비용으로 내부화 시켜야 한다는 경제학 이론에 근거¹¹⁾를 두고 1972년 OECD에서 '오염자 부담원칙'¹²⁾을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따라서, 공업선진국은 개발도상국가의 상품 생산공정과 생산방법(PPMs)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요구하며 이를 담보하기 위해 동 생산품의 유통과정을 직접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WTO¹³⁾에서는 마련하고 있다.

규제대상은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제품에 대한 규제와 생산공정에 대한 규제로 크게 두가지로 분류할 수 있으며 규제방법은 기술규제, 수량제한 상계관세로 나눌 수 있다. 국가별로 취해온 환경규제 수단은 직접규제수단과 경제적 수단으로 아래와 같이 구분된다.

- ① 직접규제수단:
* 특정 상품 및 성분의 사용 규제 및 금지 * 특정공정의 규제 및 금지 * 강제규범(배출기준, 표준, 기술규정 등) * 자원사용량 할당 * 정보공개 의무 * 사전통보 승인절차
- ② 경제적 수단:
* 배출부과금 * 제품부과금 * 행정부과금 * 예치부과금 * 재정유인제도 * 보조금 * 상계관세 * 배출권 거래제도 * 환경마크제도

이러한 규제수단은 WTO/CTE, OECD, UNCTAD, UNEP 등이 무역과 환경을 조화시키며 장차 국제통상질서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WTO/CTE 이미 환경에 연계된 무역규제와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10개의 의제¹⁴⁾를 마련하고 교토의 기후변화협약을 통해 탄소세를 조만간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WTO/CTE 의제 3에서 상품의 환경친화적 소비를 위해 환경라벨링 제도를 점진적으로 시행할 것을 모색하고 있다. 의제 4에서는 각국의 무역정책이 자국산업의 보호무역적인 의도로 이용되는 것을 막고 정보교환을 활성화함으로써 회원국 상호간의 환경정책이 불합리하게 무역의 장애요인이 되는 것을 막기 위

11) 김준한 외 3인, 국제환경규제의 영향과 대응방안, 산업연구원, 1993. 3., p. 53.

12) E. Petersmann, International Trade Law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Journal of World Trade* 43, Feb 1993, pp. 48~49.

13) WTO 기술장벽협정 제2조 2항 및 제5조 1항은 인간의 건강이나 안전, 동식물의 생명이나 건강 또는 환경을 보호할 목적으로 무역규제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14) WTO 문서번호, WTO/CTE/W/4, WTO/CTE/W/5, WTO/CTE/W/16, WTO/CTE /W/34 참조.

하여 상품제조공정¹⁵⁾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환경을 이유로 하는 무역규제는 경제의 외부효과를 내부화시켜야 한다는 경제학 이론에 근거를 두고 환경오염으로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만큼 오염발생자에게 직접 경제적 부담을 시키자는데 그 정당성을 찾고 있다.

환경오염을 유발하며 외부 비경제적 효과로 이익을 얻는 것 만큼 오염자에게 세금이나 벌금을 부과함으로써 자원의 적정배분이 이루어지고 국제통상에도 공정한 질서가 유지된다는 것이 선진국의 일관된 주장이다. 이에 반해 기술수준이 낮고 상품생산 기반이 취약한 상태에서 선진국의 환경 눈높이에 맞추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이 개발도상국가의 주장이다.

그러나, 상품의 유효수요는 선진국에 있고 선진국이 국제환경 규제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통상질서는 선진국의 주문에 따라 설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규제가 엄격한 국가에서 엄격하지 않은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에 대하여 환경규제수준의 격차에 따른 생산비의 차이만큼 환경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논리는 당연하다.

3. 국제환경협약과 무역규제

1950년 이후 약 40여년동안 세계인구는 3배로 늘어났고, 공업생산량은 50배로 늘어나면서 화석연료의 소비량도 30배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¹⁶⁾ 그 결과 개발도상국들의 산업화 약진으로 선진국의 상품경쟁력이 약화되면서 선진국들은 지구촌의 환경오염을 문제삼으며 새로운 국제무역질서를 모색하고 있다.

1995년에 설립된 WTO는 이러한 선진국들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의 결집체로서 과거 GATT 체제¹⁷⁾에 길들여진 개발도상국들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오염에는 국경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는 환경보호를 위해서는 관련국가

15) 제조과정의 노동조건, 투자 및 기술에 관한 불루 라운드(BR), 기술라운드(TR)로 확대하여 환경문제와 함께 무역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16) 김범철·이승환 옮김, *지구환경보고서*, 따님출판사, 1997, pp. 37~40.

17) GATT 제 20 조에는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수출입규제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이는 모든 회원국에게 차별없이, 수입제품과 국내제품간에 차별없이, 수출입 제품에 대한 수량제한 없이 취하도록 하고 있다.

들간의 국제협력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고, 국제협력을 위한 협약과 협약에 따른 권리의무의 이행이 충실히 이행될 때 지구촌의 환경오염도 예방될 수 있다.

1922년 이후 국제환경보호를 위해 인간의 활동과 경제행위에 대하여 공동으로 규제할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지금까지 취해온 조치는 약 150여개의 국제 협약이 있는데 이들을 형태별로 구분 -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지구촌의 모든 지역과 특정환경문제를 대상으로 다국간의 협상을 통해 채택된 국제환경협약

둘째, 국제하천이나 주변해역의 오염문제, 대기오염에 따른 산성비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주변이해당사국간에 체결된 지역환경협정

셋째, 개별국가 차원에서 지구 및 자국의 환경보호를 위해 일방적으로 발동한 조치

이들 중에서 무역규제조치를 포함하고 있는 협약은 18개¹⁸⁾로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1985년 3월에 체결된 '비엔나 협약'과 1987년 9월의 '몬트리올 의정서', 그리고 헬싱키 선언(1989)과 덴마크의 코펜하겐 회의(1992)는 지구촌의 오존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CFC(염화불화탄소), Halon, 사염화 탄소 및 메틸클로로포름의 물질을 회원국간에 수출입 금지하는 동시에 그 사용도 점진적으로 감축하여 2030년까지는 완전히 폐지하기로 하였다.

② 선진국의 유해 산업쓰레기가 자국의 엄격한 규제를 피해 부적절한 방법으로 후진국에 이전되어 처분됨으로써 국제문제¹⁹⁾로 비화되자 1989년 3월 스위스 바젤에서 '유해 폐기물 등의 유통 및 그 처분의 관리에 관한 바젤협약'이 참가국 116개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되어(1992년 발효) 현재 폭발성, 인화성, 중독성이 있는 폐기물 47종²⁰⁾을 교역금지 시키고 있다. 그리고 자국 영토 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최소화하고 충분한 처리시설을 확보해야 할 의무도 부과하고 있다. 다만 수입국이 환경친화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다.

18) 동식물보호 10개, 핵 및 대기오염 1개, 식물위생규제 4개, 동물학대 1개, 유해폐기물 2개.

19) 최초의 사건은 이탈리아 세베소에서 1976년 농약공장이 폭발된 뒤, 폭발관련 유해물이 1982년말에 프랑스 북부지방에서 발견되자 그 처분을 두고 두 나라간에 분쟁이 있었다.

20) 산업폐기물 18종, 중금속 27종, 생활폐기물 2종.

③ 지구의 온난화 현상으로 기상이변, 사막화의 진전, 극지방의 해빙, 해수면의 상승으로 생태계가 파괴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1992년 브라질의 리오 대자네이루에서 '기후변화협약'이 체결되었다. 본 협약은 주로 이산화탄소(온실 가스의 50%)의 배출량을 1990년 수준으로 감축하는데 치중하고 있다.

지역환경협정으로는 지중해오염방지협정, 5대호 인근지역의 산성비 방지를 목적으로 미국과 캐나다간의 협정을 대표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추후 동북아시아의 대기 및 오염방지를 위하여 관련국가들과 동북아 환경협정을 예상할 수 있다.

위와 같은 협정과는 별도로 자국의 독특한 주거환경을 조성 - 보전할 목적으로 미국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자국의 환경기준을 설정하고 동기준에 미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수입을 규제하거나 수출국에게 포장제 등 폐기물의 회수의무를 부과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III. 貿易에 影響을 미칠 國際環境規範

장차 국제무역거래에 영향을 미칠 국제환경규범으로는 국제조약, 국제관습, 법의 일반원칙 그리고 판례와 학설이라 할 수 있다. 국제조약은 국제환경규범 중에서 가장 우선하는 法源으로서 국경을 넘나드는 환경문제를 가장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국제환경조약은 ① 조약 당사국이 취해야 하는 이행조치를 규정 ② 이행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감시 - 감독기관을 설치 ③ 협력을 위한 메카니즘과 기관을 설치해야 한다는 공통요소가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무역에 영향을 미칠 다음 3 가지에 치중해서 검토하고자 한다.

1. 기후변화협약

대기 중에 CO₂, 메탄, CFC, 질소산화물 등이 누적되어 복사열의 방출을 차단함으로써 지구온난화에 따른 세계적인 기상이변, 사막화의 진전, 극지방의 해빙, 해수면의 상승 및 생태계의 파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1992년 6월 리

우데자이네루의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156 개 국가가 서명하여 채택된 후 1994년 3월 21부터 발효된 협약을 기후변화협약이라 한다.

기후변화협약 제4조 1항은 모든 당사국이 온실가스 배출감축을 위한 국가 전략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고 이를 공개한 후 그 현황 및 통계를 협약국 단회의에 보고하도록 하는 공통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다만 부속서 I 국가²¹⁾는 온실가스 배출을 2,000년까지 1990년 수준으로 감축해야 할 특별의무²²⁾를 지고, 부속서 II 국가는 개도국이 협약이행을 할 수 있도록 재정 및 기술적 지원을 해야 한다.

특히 에너지, 수송, 산업부문의 기술개발, 기후변화에 관한 관측체제의 확충, 산림 및 생태계보호 등의 분야에 대한 국가간의 협력을 모든 협약국가들이 지켜야 할 일반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온실가스 중 지구온난화의 66%로 분석되고 있는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는 미국이 다소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아직까지 뚜렷한 업적이 가시적으로 평가되는 것이 없다. 현재 세계도처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상기온으로 발생하고 있는 재앙을 고려할 때 보다 강력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²³⁾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협상주제를 보더라도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그중 하나가 선진국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강화하는 문제다. 2005년까지 1990년 대비 10% 감축, 2010년까지 20%감축 등의 논의가 협상중에 있다는 사실은 보다 강력한 온실가스 감축조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두번째 주제는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국제에너지세 또는 탄소세를 강제적으로 적용하느냐? 하는 문제이다.

세번째는 개도국의 온실가스 배출비중이 점점 커지기 때문에 이들의 배출의 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같은 3가지 문제를 놓고 미국과 EU가 서로 대립 중에 있으며, G-77과 중국 등 대부분의 개도국들과 선진국간에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체제 및

21) 1992년 당시 OECD 24개국가(호주, 뉴질랜드, 오스트리아, 덴마크, 벨기에, 프랑스, 독일, 핀란드, 이탈리아, 일본, 룩셈부르그,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캐나다, 아이슬란드, 에이레)와 동구권 11개국가를 부속서 I 국가라 하고 OECD 24개국가를 부속서 II라 한다.

22) 탄소세 또는 에너지세와 같은 경제수단을 활용할 때는 국가간에 통일된 공동의 시행이 필요하다.

23) 産業研究院, 國際環境規制와 産業競爭力[庚相喜], 1997. 12, pp. 137~48.

방법을 놓고 1997년 12월 교토회의에 이어 금년 11월초에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2년간 대립을 보이고 있으나 장차 기후협약은 살아 움직이는 경제협약으로서 각국의 산업활동은 물론 국제교역활동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2. 바젤 협약

이탈리아 세베소에서 1976년 발생한 농약공장의 폭발사건²⁴⁾을 계기로 구미 선진국들은 자국의 엄격한 환경규제를 피해 아프리카 및 중남미 등의 지역으로 유해폐기물을 밀수출하여 부적절한 방법으로 처분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러한 문제는 지구를 더욱 오염시킬 뿐이라는 인식에서 발효된 본 협약은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에 대해서는 환경적으로 건전한 처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바젤 협약에서는 국가마다 유해폐기물의 범위가 다르면 일관성 있는 규제가 곤란하기 때문에 폐기물의 폐기경로와 함유물질 등 2가지 측면에서 규제되어야 할 유해폐기물의 범위를 설정하고 있다.

폐기경로로서 주요내용은 ① 의료폐기물, ② 의약제품의 제조 및 조제과정 발생폐기물, ③ 수지, 라텍스, 접착제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④ 사진용 약품 및 제판제의 제조공정과 사용상에 발생한 폐기물, ⑤ 금속과 합성수지 표면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⑥ 산업폐기물 처리공정 잔유물, ⑦ 살생물제 및 식물약제의 제조, 조제, 사용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⑧ 유기용제의 제조, 조제 및 사용과정 발생폐기물 ⑨ PCBs, PCTs 또는 PBBs로 감염되어 있거나 함유한 물질이나 물품 등 일반 소비재에 관련되어 있는 오염물질이 대부분이다.

함유물질 성분으로는 금속카보닐, 베릴륨과 그 화합물, 6가 크롬화합물, 동화합물, 아연화합물, 비소와 그 화합물, 셀레늄과 그 화합물, 카드뮴과 그 화합물, 안티모니아와 그 화합물, 텔레늄과 그 화합물, 수은과 그 화합물, 탈륨과 그 화합물, 납과 그 화합물, 형석을 제외한 무기불소화합물, 무기시안, 산성용액, 염기성 용액, 유기인 화합물, 유기시안화물, 폐놀과 클로로페놀을 함유한

24) 주 19 번 참조.

그 화합물,, 에테르, 할로겐화 유기용매, 할로겐화 용매를 제외한 유기용제, PCDF와 동종물질, PCDD와 동종물질 등이 함유된 물질로서 일상생활에 연관된 소비상품이 많다.

현재 유해폐기물로 설정된 내용은 폭발성, 인화성, 중독성 등 13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는 폐기물 47 종²⁵⁾으로서 가입국과 비가입국간의 교역이 금지되며 가입국간의 무역은 환경적으로 적절히 처리할 수 있을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87년에 4개 품목, 1993년 7월 1일부터는 28개 품목의 유해폐기물을 수입금지하고 18개 품목을 수입승인, 11개 품목을 수입추천내지는 신고대상으로 지정하여 총 57개 품목에 대해 독자적으로 수입규제한 바 있다.²⁶⁾

현재는 우리나라가 1994년 2월 28일 바젤협약에 가입함으로써 118개 품목이 지정고시되어 1995년부터 시행중에 있다.

3. 비엔나 협약

염화불화탄소(CFC) 핼론등에 의한 오존층의 파괴로 인류의 건강이 위협을 받게 된다는 문제가 지적되자 구미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에어컨 제품에 대한 사용을 제한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1974년부터 UNEP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1985년 3월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협약'이 채택되었다.

비엔나협약은 오존층 파괴를 유발하는 활동을 규제하기 위한 입법 또는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원칙만 있었을 뿐 협약이행을 위한 의무사항이 없어 실효를 거둘 수 없다는 비판에 의해 이를 보완하는 '몬트리올 의정서'가 1987년 9월에 채택됨으로써 1989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협상체결 당시 원의정서에는 5종류의 CFC 물질과 3종류의 할론만 규제대상물질로 지정되어 오존층을 보호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인식으로 '헬싱키선언',²⁷⁾ 런던회의,²⁸⁾ 코펜하겐회의,²⁹⁾ 코스타리카 산호세 회의³⁰⁾를 거쳐 현재에

25) 18종의 산업폐기물, 27개종의 중금속, 그리고 2종의 생활폐기물(가정폐기물, 가정폐기물의 소각잔류물)로 되어 있다. 산업연구원, 국제환경규제의 영향과 대응방안, 1993. 3, pp. 26~27.

26) 대외무역법 제 18조 제 2항 및 통상산업부 통합공고 규정에 의함.

27) 1989년 5월 헬싱키에서 개최된 가입국 회의에서 5종류의 CFC 물질과 3종류의 할론사용을 2,000년까지 폐지하기로 의결하였다.

이르고 있다.

특히 산호세회의에서는 1999년까지 5억 4천만달러 수준의 다자기금을 확보하여 장차 개도국의 오존층 파괴물질의 조기전폐를 지원하기로 의결³¹⁾ 하였다.

우리나라는 1992년 2월에 비엔나협약 및 원의정서에 가입하였고 1994년총회에서 수혜개도국의 지위를 확보함으로써 국내수요 충당을 위해 CFC 수출을 계속할 수 있다. 의정서 내용을 준수하기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나 수입 그리고 판매를 규제, 대체물질 그 이용기술의 개발을 위한 기금의 조성, CFCs 등 특정물질의 사용합리화 추진 등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여 1992년부터 시행중에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본 협약가입으로 프레온 가스제조 및 대체물질 산업인 화학, 가스, 산업기계와 가스 사용산업인 전기, 정밀기계, 의약품, 자동차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인다. CFC는 냉장고, 에어콘, 냉동공조기계, 자동차(에어콘), 반도체 - 시계 - 사진기 - 계측기(세정제)에 필수품으로 사용되는 물질이기때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우리나라가 대체물질 개발을 하지 못하거나 조속히 성공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선진국에서 개발된 비싼 대체물질(기존의 CFC보다 가격이 비싼 값)을 수입해서 사용하여야 하기때문에 수출제품의 가격경쟁력 약화로 인한 수출감소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CFC 시장규모는 연간 400억원 규모에 불과 하지만 CFC, 할론 등 오존층 파괴물질을 사용하는 기업의 수는 4,000개 내지 5,000개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³²⁾된다. 그리고 이들이 생산하는 관련제품의 총시가는 24조원, 이 금액은 1995년의 GNP 중 약 11.6% 인 점을 고려할때 상당한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대체물질을 사용하기 위해 기존의 설비를 개체하는데 드는 비용까지 고려하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할 것이다.

통상산업부 산하의 한국정밀화학공업진흥회의에서는 특정물질 제조업자 및

-
- 28) 1990년 6월 런던에서 제2차 가입국회의를 열어 10종의 CFC와 사염화탄소 및 메틸클로로포름이 규제대상물질로 추가하는 한편 기존의 규제대상기간을 조정하는 1차 개정의정서를 발표하였다.
 - 29) 1992년 11월 코펜하겐에서 할론 3종은 1994년부터, HCFC를 제외한 나머지 18종의 물질은 1996년부터 사용을 금지하고 HCFC 사용은 2030년까지 전폐하기로 하는 2차 개정의정서를 발표하였다.
 - 30) 1996년 11월 19일부터 27일까지 산호세에서 제8차 몬트리올 당사국회의 총회를 개최하였다.
 - 31) 그 외에도 의정서 제2국가(미국, 호주, 네델란드, 이탈리아 등)는 의정서 제5국가(중국, 인도, 콜롬비아, 가나 등)에 대한 기술이전 촉진방안을 마련하고 구소련 연방인 조지아가 의정서 제2국에서 5국으로 지위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다..
 - 32) 산업연구원, 국제환경규제와 산업경쟁력, 1997. 12, p. 118.

수입업자로부터 징수³³⁾한 수입금을 기금으로 대체물질을 개발³⁴⁾하고 특정물질의 배출을 억제하거나 사용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1996년에는 67 억원, 1997년에는 기금예산이 95 억에 달했다.

IV. 環境規制에 대한 主要國家의 對策

1. 미 국

미국의 환경정책은 1948년 수질오염통제법(Water Pollution Control Act)을 제정함으로써 가시화 된 후 1955년 대기오염통제법(Air Pollution Control Act)을 제정하여 연방정부는 환경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지방정부는 환경기술과 제정지원에 대한 업무를 관장하는 방법을 취해 왔었다.

미국은 환경업무가 증가하자 1969년에는 기존의 환경법을 정비하고 미국환경법의 기본이 되는 국가환경정책법³⁵⁾을 제정하였다.

1970년에는 환경위원회와 환경보호청을 창설함으로써 미국전역에 효력이 있는 실정법과 집행기구가 있고, 각주에서도 주환경정책법을 제정하여 연방차원의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³⁶⁾와 부차적으로 주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병행할 수 있는 입법과 집행으로 환경보호의 실효성을 높일수 환경집행체제를 갖추고 있다.

미국의 환경법제는 소비자(국민)보건 및 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최소화하고, 예방하고, 벌하거나 구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법률과 특성이 있다.

① 연방법, 연방기관이 공표한 규칙 : 국민의 환경기본권에 관한 국민의 건강

33) 징수대상은 CFCs가 15종, 할론이 3종, 사염화탄소, 트리클로로에탄 등이다.

34) 주관연구기관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을 중심으로 한국신화, 울산화학 등이 일부 대체물질을 개발한 바 (HCFC - 22, HFC - 134a HFC - 152a) 있고, 2 단계로 2000년까지 총 5개의 과제를 개발중에 있다.

35)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의 약자로서 미국의 환경에 관한 권리장전(Environmental Bill of Rights)이라고 부른다. 1959년 상원 James E. Murray 이 "The Resources and Conservation Act of 1960"을 발의할때 동법을 입법화하려 시도했고, 그후 John Dingell 하원의원의 노력으로 입법화 되었다.

36) 미국의 환경영향평가제도는 개발행위가 초래할 환경파괴의 정도를 평가하여 환경파괴의 가능성 있는 개발행위를 억제하고 개발에 따른 환경파괴를 최소화할 목적으로 국가환경정책법에 규정하고 있다.

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서 규제방법은 지시와 통제, 배출규제, 기술강제, 시장규제³⁷⁾로 이루어진다. 연방환경법은 환경보호를 위한 보통법의 결함을 보충하는 기능을 가진다.

지시와 통제는 관련 경제주체가 특정활동을 행하거나 행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으로서 주로 식품과 의약품 및 유독물질의 사용을 규제하는 내용이다. '멸종위기종보호법'(1973, ESA), '안전식수법'(1974, SDWA), '자원보전재생법'(1976, RCRA), '유독물질규제법'과 '슈퍼펀드법'(1980, CERCLA)등이 있다. 배출규제(emissions)방법은 공해배출업소가 배출할 수 있는 오염물질의 양을 제한하는 것으로 대기정화법과 수질정화법에서 이용되고 있다. 기술강제(technology forcing)방법은 대기와 수질의 오염을 최대로 억제할 수 있는 특정의 정화기술을 강제로 실시하게 하는 것이다. 시장규제방법은 오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제적인 유인책 내지 동기를 부여하는 것으로 배출허가제,³⁸⁾ 배출부담세, 환경기준을 지키지 않는 대상자에 대한 벌금부과, 세금환불제 등이 있다.

② 주법, 규칙, 지방조례 : 주의 범위안에서 적용 - 집행될 환경문제로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다.

지역사회의 환경친화적인 상품생산 및 활동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상품과 활동을 억제하기 위한 조세로서 석유과소비세(Gas guzzler taxes), 재활용신용세(recycling tax credits), 원료사용세(taxes on use of virgin materials), 유해폐기물 발생세(taxes on hazardous waste generation) 등이 있다.

③ 판례로 형성된 보통법 : 형평법상의 법원칙을 원용하여 타인에게 해를 입히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보편화된 의무에서 법적근거를 찾는다. 모든 성인은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타인의 재산권을 존중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의무는 계약이 없는 사항으로 당사자간의 명백한 합의 없이도 성립한다. 공해로 '불법방해'(nuisance), '불법침해'(trespass), '과실'(negligence), '위험활동으로 야

37) 오염예방 또는 제거비용을 어느정도 제품의 생산비용에 반영하여 상품시장기능으로 오염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고자 하는 취지의 방법이다. J. Schlickman, T. McMahon A. Riel Disley & Austi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and Regulation*, Butterworth Legal Publishers, 1991, pp. 9~11.

38) 환경보호청(EPA)으로부터 사전에 일정한 배출총량(Emission Right)을 배정받은 후 허용배출량이하로 배출하게되면 그 차이만큼 다른 업체에게 판매할 수 있는 제도로서 offset system, Netting system, banking system 등이 있다.

기되는 보이지 않는 책임'(strict liability), '배상'(restitution) 등의 원칙에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입게되는 환경피해의 내용을 일반사람으로서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있으며 집단소송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절차상의 편의를 주고 있다.³⁹⁾

④ 관습법 : 미국에서 관습법의 기초는 영국에서 근원을 가지고 개발되어 형성된 사람과 사물의 관리 및 보안에 관련된 규칙과 원리의 실체로서 법원에 의해 인정되고 확인된다. 미국의 관습법은 성문법과 같이 고정되거나 절대적인 규칙이 아니며, 성문화되지 않은 관습법은 유통성 있고 살아 있는 법이라 할 수 있다.

⑤ 환경범죄 처벌과 사법심사 : EPA가 설립된 이후 미국의 환경범죄자에 대한 행정부의 처벌이 강화되고 그 처리절차도 매우 간소화되고 있다. 행정기관은 환경오염과 관련된 조사, 감독 및 통제권한을 주로 행정명령이나 제소로써 환경법규를 수행한다. 소비자보호 중심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는 특정의 오염행위를 금지하고자 할 때는 연방법원에 제소하여 잠정적인 금지명령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⁴⁰⁾ EPA는 환경법에 명시된 권한에 의거 환경법규를 집행하며 필요한 경우 적절한 환경기준을 설정하고 관련규칙을 제정하기도 한다.

특히 1980년대부터는 환경법규나 환경기준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행정적 재판을 가할 수 있다. 즉, 5,000 달러 미만의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현장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데 이를 'field citation'이라 한다.⁴¹⁾

행정기관의 결정이 자의적이고 임의적(arbitrary and capricious)이라는 부당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 경우에 한해서 침해당사자는 행정기관에 구제절차를 밟아 연방법원 또는 항소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은 대부분의 사례에서 행정기관의 재량적 조치나 결정을 존중하는 태도를 취해온 것으로 분석된다.⁴²⁾

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은 환경법규를 위반한 자나 법규상의 의무를 적절하

39) 이한성, 미국환경집행법 체계에 대한 연구(1), 「법조」 제 476 호, 1996. 5, pp. 3 2~49

40) 이한성, 전개서 pp. 14~17

41) 42 U.S.C.A. § 7413(d)(3) [CAA 113(d)(3)]

42) J. Schlickman, T. McMahon A. Riel Disley & Austin, *supra* note 17 p. 9.; 이기한, 미국 환경보호청의 법규집행에 있어서의 연방법원의 역할, 「환경법 연구」, 제 15 권, 1993, pp. 115~156.

게 이행하지 못한 행정기관 또는 행정공무원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러한 권리는 시민단체나 외국인에게도 적용된다. 법집행자로서의 시민의 참여기회를 넓히고자 공무원을 제소하여 승소한 자에게는 소송비용이 반환되고 특히 공해배출업체에게는 배출상태의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다.

최근 클린턴 정부는 국내환경법규의 실효성과 자국환경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자국의 환경기준을 영역내에는 물론 영역밖에 있는 사람, 상품 및 행위에 대해서 국제법상의 근거나 다국간 승인 없이 일방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특히 ① 국제환경협약이 환경보호를 위한 무역규제조치를 허용하는 경우 ② 제3국의 환경오염행위가 미국영역에 영향을 미친다는 과학적 근거가 있을 경우 ③ 멸종위기에 처해 있는 동식물이 위태롭거나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다 는 과학적 근거가 있을 경우 ④ 제3국이 과학적 근거가 있는 국제환경기준의 실효성을 훼손시킬 경우 등에는 일방적 통상규제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기본 방침을 공고한 바⁴³⁾ 있다.

모든 연방기관은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취하는 내용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서(Environment Impact Statement : EIS)를 작성하여야 한다. 평가서에는 제안된 환경조치의 환경적 영향과 대체방법 및 조치결과에 대한 악영향과 회복할 수 없는 자원의 훼손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며,⁴⁴⁾ 대통령은 매년 환경상태보고서(Environment Quality Report)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⁴⁵⁾

환경상태보고서는 3명의 위원과 관련직원으로 구성된 환경위원회에 의해서 작성되며 주로 환경에 관한 연방정부의 정책과 조치에 대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

2. 일 본

일본은 이미 1949년에 이미 동방아연의 납중독사건을 겪은 후 '도쿄도 공장공해방지조례'를 제정한 바 있었지만 전쟁으로 공해문제를 인식할 여유가 없었다.

1953년에 미나마타병 1호 환자가 발생하자 그 원인규명을 4년이 지나서야 중금속임을 밝혀내고 신일본질소의 유기수은이 포함된 폐수배출에 관련된 용

43) R.E. Hudec, "GATT Legal Restrictions on the use of Trade Measures against Foreign Environmental Practices", in J.N. Bhagwati & R.E. Hudec, Fair Trade and Harmonization : Prerequisites for Free Trade?, MIT Press, 1996, p. 103

44) § 4332 (NEPA § 102).

45) § 4341 (NEPA § 201).

수소비자보호 조치로 이어졌다.

1960 ~ 62년에 걸쳐 요카이치시에서 3일동안의 스모그현상으로 천식환자가 대량으로 발생하였으며, 1964년에는 카드뮴중독으로 이타이이타이병⁴⁶⁾이 발생하였다. 같은해 후생성에는 처음으로 '공해과'가 설치되었고 1967년에는 '공해 대책기본법'이 제정공포됨으로써 환경공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규범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볼수 있다. 1965년에 '공해방지사업단'이 발족되었고, 이듬해에 '대기오염방지법'이 공포되면서 SO₂에 대한 배출기준이 설정되었다.

1969년에는 동경의 릿쇼(立正) 고등학교학생 수십명이 체육시간에 호흡질환으로 쓰러져 '저황화 10개년계획'을 시작하는 동시에 '동경도 공해방지조례'⁴⁷⁾가 제정되었다. 본 조례는 명치시대 아래 국가의 종복으로 간주되어 왔던 자치단체가 시민의 소리를 배경으로 나라의 주인으로 일어서서 국민이 국가를 선도하기에 이르렀다.⁴⁸⁾

본 조례는 산업활동을 위축시킨다고 주장하는 국가와 기업으로부터 많은 반대를 받았지만 일반국민들로부터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같은해에 오사카 공항은 인근주민들로부터 소음공해에 따른 소송을 받은 후 1975년에 폐소⁴⁹⁾하여 그대신 간사이공항이 건설되는 계기가 되었다.

1971년에 환경청을 발족한후 중앙공해대책심의회를 설치하여 각종환경법제를 정비하는 동시에 소비환경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는데 기여하였다. 1971 ~ 1973년 3년동안 4대 공해재판⁵⁰⁾에서 원고측 승소판결과 함께 1972년

46) 일본어로 '아프다. 아프다'라는 뜻으로 손, 발, 허리, 배, 어깨 등에 심한 통증이 발생하는 병이다. 미쓰이상사가 경영하는 가미오카 광산에서 배출된 카드뮴이 농업용수로 사용되어 여기서 생산된 농산물을 먹은 사람의 뼈가 약해지고 골절이 발생하는 병이다. 1972년 미쓰이는 사망자에게는 1,200만엔, 환자에게는 60만엔 배상판결됨(토양오염도 배상판결) 이진, 지구시대의 환경정책, 기한재, 1996, pp. 133~4, 155.

47) 본 조례는 주민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폐적한 생활을 유지하고 구체적으로 주민의 인권을 확립하고자 하는 규범으로 시민으로부터 많은 공감을 받으며 공해방지를 하는데 원동력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48) 紫田徳衡, 松田雄者, 公害から環境問題へ, 東海大出版會, 1992 p. 202.

49) 그러나 본사건의 손해배상부분은 국가의 상고로 1981년 대법원에 의해 최종 기각됨으로써 일반국민은 물론 법조계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神岡浪子, 日本の公害史, 世界書院, 1992, pp. 151~152.

50) 일본질소 비료에 의한 '미나마타병', 도야마의 '이타이 이타이병', '욕가이치병' 및 '오사카공항의 소음사건'을 말하며, 1967년 미나마타병 환자 가족 3인이 昭和電工을 제소한 것이 일본의 최초공해재판이다.

에 무과실책임이 오염방지법에 삽입되어 기업체는 황산화물의 배출량에 따라 부과금을 납부하고 정부가 인정한 환자는 평생동안 생활비를 지급받게 되었다. 1974년에는 국립공해연구소(현 환경연구소)를 발족하는 동시에 전국 24개 지역을 SO₂ 총량규제⁵¹⁾지역으로 지정⁵²⁾하였으며, 1976년에는 처음으로 CO와 수질에 대한 환경기준이 설정되었다.

당시에는 ① 공장, 사업장에 대한 새로운 규제 ② 3지역의 총량규제 ③ 디젤엔진 사용 및 가솔린 사용의 트럭과 버스를 규제하다가 승용차의 숫자가 급격히 늘어나자 1982년부터는 자동차와 경트럭의 배출가스도 규제하였다.

일본은 1990년대에 와서 기계 및 전자기기 등의 고부가가치형의 기술집약적 업종으로 정착되면서 여가선용과 체적한 환경속의 생활을 위해 환경부화가 적은 지속적 경제발전이 가능한 사회의 구축과 국제환경기준을 적극적으로 준수하는데 정책적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 된다.⁵³⁾

생활폐기물을 소각, 재이용, 재사용하여 매립하는 폐기물의 양도 최소화하고 있으며, 정부는 3,300개의 지방자치체에게 MSW(Municipal Solid Waste)의 양을 2,000년까지 1990년에 비해 7.3%를 감소⁵⁴⁾시키도록 관리책임을 하달한 상태이다.

소각로에 대해서는 1일 소각량 1톤당 600만원 또는 소각비용의 10%를 보조해주고 있다. 1985년부터 1990년 사이에 연간 약 160만톤씩 소각량이 늘었고 투자총액은 3,000억엔 이였다. 1992년부터 폭발성, 감염성, 독성 등 사람의 건강 또는 생활환경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을 '특별관리 폐기물'로 정하는데 폐산, 폐알카리, 폐석면, 감염성 폐기물 연소하기 쉬운 폐유 및 연소에 따라 생기는 잔재물로서 중금속을 포함하는 것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중에서 '특정유해폐기물'은 수은, 납, 카드뮴, 6가크롬, 시안화합물, PCB, 유기인, 트리

51) 총량규제란 공장등이 밀집되고 있는 고농도 오염지역을 지정하여 각 지역마다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계산하여 각각의 공장 및 사업장마다 배출량을 할당해서 환경오염을 규제하는 방법이다.

52) 동경, 가나가와 오사카를 질소산화물 총량규제지역(1일 평균 0.02 ppm)으로 지정하였다.

53) SO_x 총배출량은 1989년에 87만톤으로 1970년보다 82%를 감소 시켰고, NO_x는 1989년에 160만톤으로 1970년보다 21%를 감소 시켰다. OECD レポート:日本の環境政策, 中央法規, 1994, p. 88.

54) MSW의 약 75%는 소각(96년부터는 84%) 처분되는데 그 비용은 1조 4천억엔으로 전국 평균톤당 처리비용은 2만 8천엔(동경은 3만 5천엔)이며, 산업폐기물의 경우 22%는 재이용, 15%는 최종처분, 나머지 63%는 화학 또는 소각처리되고 있다(처리비용은 3조 5천엔). 이진, 전계서 p. 182.

키로로에틸렌, 테트라크로로에틸렌을 함유한 폐기물을 말한다. 그러나, 여러 호수의 수질은 적조현상, 부영양화로 환경기준 3 mg/l 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악화되어 하수도 보급율을 2,000년까지 80% 수준으로 확보하려는 계획을 하고 있다.

1992년부터 공장과 공공단체 또는 주민단체와 약 950여 건의 공해방지협정을 체결하여 오염방지기, 발전된 연소기술, 질높은 연료사용, 효율향상대책 등의 대책을 강구하면서 공해방지산업⁵⁵⁾이라는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3. EU

산업혁명의 발생지인 영국은 지구촌에서 가장 먼저 환경문제를 경험한 나라이다. 따라서, 1876년 영국에서 제정된 '강 오염방지법'은 세계최초의 공해규범이라 할 수 있다. 그 후 1952년 런던스모그사태⁵⁶⁾를 경험한 후 1956년에 대기정화법을 제정하였으며, 1970년에는 환경부를 설치해서 정부와 기업간의 협의를 통한 가장 실용적인 수단으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있다.

환경부는 수상직속의 독립된 장관급 중앙행정기구로서 차관만 6명을 두고 있는 강력한 부서로서 ① 전원과 야생자원 보호 ② 역사유적 및 건축유적의 보호 ③ 주택행정, 국토계획행정, 도시재개발 ④ 지방자치단체 행정지원 ⑤ 수자원 관리 ⑥ 스포츠레크레이션 등의 업무를 관장하며 런던본부와 9개의 지역사무소를 설치하고 있어 괘적한 환경분위기 조성에 치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독일은 2차대전후 급속한 공업화로 라인강의 수질이 크게 오염되자 미국의 환경강령에 자극을 받고 1970년 9월 25일 '환경보호강령'을 발표한 후 1971년 '환경프로그램'에 의한 환경영양평가제도를 시행하려 했으나 지방자치단체와 산업체의 방해로 무산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기도 하였다.⁵⁷⁾ 더구나 1971년부터 환경보호를 인간의 존엄성과 관련시켜 기본법⁵⁸⁾으로 성문화해야 한다는 인식

55) 1966년 공해대책기기 생산액이 341억엔, 1976년에 7천억엔, 1992년에 1조 810억엔으로 증가하였다.

56) 1952년 12월 5일부터 약 2주동안 SO₂ 일일 평균농도가 0.75 ppm의 고농도스모그 현상이 계속되어 약 4천명의 공해사망자가 발생했던 환경사에 길이 남는 환경공해사건이다.

57) 이진, 전계서 p. 213.

을 하고 있으면서 성문화의 유형방법⁵⁹⁾을 두고 지금까지 정당간의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기본법과 달리 바이마르 헌법의 전통을 이어받은 주헌법들은 환경보호에 대하여 바이마르 헌법과 비슷한 규정⁶⁰⁾을 두고 있어 주영역안에서 구속력을 가지고 주의 법률을 구속한다. 그러나 연방국가로서 기본법 31조에 따라 '연방법 우위의 원칙'이 통용되고 있고 대부분의 환경보호입법권은 연방에 속해 있는 실정이므로 주는 연방의 환경정책에 의해 한계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주법상의 환경보호에 대한 규정들은 제한되어 있고, 그결과 여러 주법에 규정되어 있는 환경보호에 대한 규정들은 독일에서 별로 큰 의의가 없을것으로 분석된다.⁶¹⁾

다만 녹색당이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이익집단과 연합하여 자발적인 환경운동으로 이어져 국민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독일은 행정부가 국민의 여론을 살피며 대체로 미국과 비슷한 환경규범을 정해놓고 집행하고 있다.⁶²⁾ 폐기물의 처리와 매립은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공동으로 규제하면서 유해폐기물의 저장, 가공, 처분은 정부의 허가를 요하며 연방정부의 규칙이 지역계획의 지침이 된다. 수질, 대기오염정책, 생물 종보호, 폐기물과 소음공해 등에 관한 권한은 연방정부에 있고, 수자원의 이용, 토지이용, 자연과 경관보호 등은 전통적인 주정부의 소관업무로서 주정부는 집행책임을 진다.

이와같은 영국과 독일의 환경규범과는 별도로 구주공동체위원회(EC) 이사회가 유럽환경청(1990. 5. 7)의 설립을 의결하고 코펜하겐에서 공동체의 환경업무⁶³⁾를 총괄적으로 수행(1994. 10. 31)하도록 하고 있어 유럽의 환경문제는 새로

58) 과거 바이마르헌법 제 150조 1항에는 천연기념물과 자연경치에 대하여 국가의 보호가 있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으나, 1949년 제정된 Bonn 기본법에는 환경에 대한 아무런 명시가 없다.

59) H. Klein은 입법위임규정, 방어권 사회권(3 가지)으로, H. Dellmann은 사회권, 방어권, 객관적 환경보호(3 가지)를, M. Kloepfer는 방어권, 제도적 보장, 사회적 기본권, 급부권, 적극적 참여권(5 가지)을, M. Maus는 방어권, 국가목표규정, 기본권과 국가목표규정을 결합시키는 방법(3 가지)을, H. Soel은 사회권, 자유권, 환경원칙, 국가목표규정(4 가지)을 각각 주장하고 있다.

60) 1988년까지 Baden-Wurttemberg(제 86조), Bayern(제 141조), Bremen(제 11a조, 제 12조), Hamburg(헌법전문), Hessen(제 62조), Nordrhein-Westfalen(제 29a조 1항), Rheinland-Pfalz(제 40조 3항), Saarland(제 34조 2항) 등이다.

61) R. Stober, Umweltschutzprinzip und Umweltgrundrecht, TJ 1988, S.426ff.(429).

62) 1986년 소련의 체르노빌 원전사고를 계기로 내무부 산하 연방환경청에서 연방환경 - 원자력안전부로 확대개편 되면서 독립된 부로 발족되었다.

63) General Report on the Activities of the European Union 1994, point 483.

운 전환기가 되고 있다. 1957년에 서명되고 1958년에 발효된 EEC 설립조약 제 2 조에 ‘공동체의 경제활동에서 조화로운 발전과 생활수준의 가속적 향상’을 명시하고 제 36 조에 ‘인간과 동식물의 건강 및 생명의 보호’를 위하여 회원국 간의 교역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970년에는 자동차의 소음기준⁶⁴⁾과 오염물배출에 관한 준칙⁶⁵⁾들이 채택되기도 하였다. 1973년 11월에는 공동체환경정책의 11 가지 일반원칙⁶⁶⁾을 천명한 EEC 제 1 차환경행동계획을 채택하였으며, 1992년 마스트리히트조약에 의거 개명된 EU 조약에서는 ‘환경에 관한 지속가능한 성장’과 ‘생활수준과 삶의 질의 향상’으로 종전의 EC 설립조약 제 2 조를 변경하였다.

EU 영역내에서 구속력 있는 공동체입법행위의 종류로서 명령(Regulation),⁶⁷⁾ 준칙(Directive),⁶⁸⁾ 결정(Decision)⁶⁹⁾ 등 3 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환경보호는 유럽재판소에 의하여 판결된 판례⁷⁰⁾에서 공동체의 본질적 목표 중의 하나로 간주된 바 있으며, *Containers for beer and soft drinks* 사건⁷¹⁾에서 재차 확인되었다. EU의 환경정책은 수질오염, 공기오염, 소음, 화공물질에 의한 오염, 폐기물관리, 동물과 야생동물의 보호, 자연환경의 보호 등에 치중해 있으며, 환경영양평가제도를 병행하면서 철저한 환경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64) Council Directive 70/157, OJ 1970, L42/6.

65) Council Directive 70/220, OJ 1970, L76/1.

66) 주요내용중 환경손상을 방지·제거하기 위한 비용은 오염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오염자 부담의 원칙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아시아사회연구원 발행(1997) “환경 보호와 국제법질서” 109~110면 참조.

67) EC 제 189 조 2 단에 의하면 구속력을 가지고 모든 회원국내에서 일반적용성을 띠고 발효와 동시에 회원국국내법질서의 일부를 형성한다(별도로 편입절차가 불필요).

68) 준칙은 명령과 달리 전부가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선택한 회원국에 한해서 구속력을 가진다.

69) 결정은 결정이 내려지는 회원국수법자에게만 전부 구속력을 가진다.

70) Case 240/83, [1985] ECR 531 at 549.

71) Case 302/86, [1988] ECR 4607.

V. 結論

오늘날 지구촌은 엘니뇨 현상과 오존층 파괴로 인한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인간의 영리위주의 산업생산활동과 그릇된 소비 행위에 있다고 본다. 인간의 편의위주의 소비관행과 이에 따른 소비수요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경쟁적인 생산산업활동에서 발생하는 환경공해는 지구의 자정능력을 상실하게 하였다고 할 수 있다.

소비와 생산활동은 일정한 국경을 가지고 특정한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으나 여기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은 일정한 영역을 초월하여 지구촌 전체를 오염시키고 나아가 오히려 전 인류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게 하는데 문제가 심각하다.

따라서, 환경보호를 위해 취해지는 일국의 환경법규나 환경개선 제도는 부분적으로 효과가 있을 뿐 지구촌 전체가 좋은 환경을 유지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기업의 자유활동으로 상품의 생산에 따른 이익은 생산주체와 구가에게 돌아가게 되고 상품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은 바람과 유수를 타고 다른 이웃 나라로 넘나들어 사실상 국경이 없기 때문이다.

선진산업국가들은 환경오염이 그릇된 산업활동과 소비형태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고 비교적 너그럽게 방임해 오던 개도국의 생산시설과 생산활동을 국제 협약을 통해 1970년대부터 제한하여 왔지만 정치-경제논리에 밀려 기대만큼 실효성을 가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의 인구폭증과 국가마다 경쟁적으로 취하고 있는 공업증시정책은 지구촌의 환경문제를 더욱 악화 시켰다고 할 수 있다. 기업과 국가는 국가경쟁력을 키우기 위하여 오직 영리취득에 치중해서 경쟁적으로 상품을 팔고 보자는 생산정책을 추구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오염물질은 생산자에게 아무런 부담을 주지 않고 생산자보다 소비자의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모순된 행위를 주도해 오던 산업선진국이 1970년대 이후 개발도상국의 상품생산경쟁력 강화로 오히려 상품소비국으로 전도되면서 외부비경제적 생산체제는 더욱 심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산업선진국들은 환경을 개선하고자 자국의 법령을 신설 또는 정비하는 한편 각종환경협약을 주도하여 지금까지 약 150여개의 협약을 체결하였다. 폭발성, 인화성, 중독성이 있는 폐기물 47종의 국제이동을 금지시키고 CFS, CO의 사용을 2010년까지 점진적으로 제한 또는 금지하기로 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얻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은 한계가 있다고 보고 환경오염문제는 국제무역과 연계 시켜 상품의 생산과정에서부터 경제의 외부효과를 내부화 시켜야 한다는 경제 이론에 근거를 두고 보다 환경영향평가에 의해 강력한 '오염자 부담원칙'의 적용을 강구하고 있다. 생산활동에 공해방지시설을 의무화하는 한편 상품생산과정의 공해유발을 방지하기 위한 투명성을 보장하게 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공해방지를 위한 국제협약내용을 준수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직접 또는 간접수단으로 무역을 규제하는 조치를 점진적으로 취해갈 것으로 보인다.

국제협정으로서 기능과 효율성에 한계를 보여오던 GATT가 1995년 WTO로 발전적으로 해체된 사실은 환경오염과 무역을 연계시켜 장차 지구촌의 행정부로서 투명한 생산활동과 공정한 무역으로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선진국들의 의지가 강력히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기후변화협약, 바젤협약, 비엔나 협약은 살아 움직이는 지구촌의 실정법적 경제규범으로서 각국의 생산과 무역을 통제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WTO 무역환경위원회(CTE), OECD, UNCTAD, UNEP 등 국제기구는 각종 환경협약을 준수할 수 있도록 생산산업활동과 소비활동에 대한 강-온 책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전한 소비관행을 통해 상품생산자로 하여금 환경친화적 상품을 공급하도록 하는 압력수단을 개발하고 나아가 사회를 선도 할 수 있는 환경문화의 조성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테면 환경마크제 실시, 청정에너지 개발육성 시책실시 또는 제조물책임자법 제정 등은 환경 공해를 방지하는 동시에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 다만 공업지역에서 발생했던 각종산업질병과 환경오염의 정도로 보아 소비자가 아무리 좋은 소비행위를 하더라도 이는 근본적으로 환경을 개선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상품생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와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본다.

參 考 文 獻

- 환경부, 미국의 주요 환경관계법, 1996. 11.
- _____, 환경과 무역 연계론의 관련 참고자료 II, 1994. 8
-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환경보호와 국제법질서, 1997. 9
- 산업연구원, 국제환경규제와 산업경쟁력, 1997. 12
- _____, 국제환경규제의 영향과 대응방안, 1993. 3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 - 환경 관련과제와 우리나라의 입장, 1995
- 박기갑외, 환경오염의 법적 구제와 개선책, 서림과학원 총서 No. 47, 1996. 12
- 이 진, 지구시대의 환경정책, 기한재, 1996. 11.
- 백 일, 지역과 환경의 경제학, 한울, 1995
- 권진혁, 환경위기와 미래과학, 생능출판사, 1997. 1
- 한국환경개발기술원, 환경문제에 대한 국민의식, 1996.
- _____, 환경보전의 국제화와 정책대응, 1995
- 최병두, 한국의 환경산업과 환경기술, 한울, 1995
- 환경청, 울산 - 온산 공단공해 피해주민 이주대책을 위한 조사연구, 1984.
- 이상돈,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법, 「환경법연구」 제17권.
- Worldwatch Institute, State of the World, 1997 (김범철 - 이승환 옮김)
- World Resources Institute(WRI), *International Institute for Environment and Development and World Conservation Union*, Washington, D.C.1996.
- GATT, Trade and Environment, 1992.
- World Bank(1992), *World Development Report* 1992 : Development and Environment.
- Arthur, L.M. (1988), The Implication of Climate Change for Agriculture in the Prairie Provinces, CCD 88 - 01, Ottawa : Atmospheric Environment Service.
- Bradley, R.S. and Jones, P.D. (1992) Climate since A.D. 1500, London : Routledge.
- Hansen, J.E., Lacis, A., Ruedy, R. and Sato, M. (1992) 'Potential climatic impact of Mount Pinatubo eruption', Geophysical Research Letters 19 : 215 - 18.
- Kemp, David D., Global environmental issues : a climatological approach (1994),

- Simultaneously published in the USA and Canada.
- Clapp, B.W. (Brian William), An Environmental History of Britain, Longman Group UK Limited(1994).
-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UNEP's Way Forward : Environmental Law and Sustainable Development(1995).
- UNEP, UNEP's Programme on Environmental Law(1993 ~ 1996).
- UNEP, UNEP - Environmental Law Guidelines and Principles series.
- Fatma - Zohra Ksentini, Human Rights, Environment and Development, UNEP ,1995.
- Masa Nagai, Environmental Law and International Trade in Hazardous Chemicals, UNEP(1995).
- M. Sornarajah, Foreign Investment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UNEP(1995).

ABSTRACT

International Rule for Environment and International Trade

Shin, Han dong

Environmental problems such as global climate change, depletion, ocean and air pollution, and resource degradation – compounded by an expanding world population – respect no border and threaten the health, prosperity and jobs of all mankind. Our efforts to promote democracy, free trade, and stability in the world will fall short unless people have a livable environment.

We have an enormous stake in the management of the world's resources. By increasing demand for timber, natural gas, coal and consumer's goods have destroyed the grounds for living. Greenhouse gas emissions anywhere in the world have threatened coastal communities, and then changed the Earth's climate system. The burning of coal, oil, and other fossil fuels is increasing substantially the concentration of heat - trapping gasses such as carbon dioxide, methane, and nitrous oxide in our air. The earth's temperature and sea levels are rising as a result.

Since 1972 there has been a marked growth in the number and scope of environmental treaties. In particular, after the 1992 Rio Conference, international legal instruments became more concentrated on addressing environment within the context of sustainable development and incorporated a number of new concepts and innovative approaches. A preliminary analysis of recent conventions and in particular those associated with the Rio Conference indicates various ideas, concepts and principles which have come to the fore including sustainable development, equity, common concern of

humankind,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and global partnership.

However, international trade also has an environmental impact which must be minimized or countered. Positive measures are to be preferred to achieve environmental goals, but where trade provisions are necessary, they should be appropriately used within environmental conventions to facilitate the reduction and limitation of the negative impacts of trade and to enhance the complementarity of the multilateral trade regime with the imperatives of environmental protection, in the interests of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sustainable development generall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to recognize and endorse this need to achieve complementarity between trade and environment issues.

Key Words : Rio Conference, Environmental Protection.